

환경관리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 제안이유

- 각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매립으로 인한 심한 악취발생과 침출수 배출로 수질과 토양이 오염되는 등 제2의 주변환경 오염문제 발생으로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을 “매립방식에서 소각방식으로” 변경하여
- 최첨단 현대식 소각처리시설을 갖추고 소각한 재를 매립하는 1일 200톤(100톤/일×2기) 소각처리용량 규모에 20년이상 사용이 가능한 위생적인 매립장과
- 읍·면·동별로 산재되어 있어 많은 인력과 노력이 소모되고 있는 간이선별장을 한곳으로 일원화하여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 고정인력을 배치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여 양질의 재활용품 등을 선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재활용선별시설 등은
-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시설로써 운전 초기부터 효율적인 설비가동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조기 해결함과 동시에 시설의 안정적인 운전에 만전을 기하고 예산절감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민간이 운영주체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운영관리 주체라 할 수 있음.

□ 주요골자

가. 민간위탁의 범위를 환경관리센터의 운영 및 관리 전반으로 함.

나. 수탁기관은 파주시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함.

다. 위탁방법은 협약서를 체결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함.

□ 검토의견

가. 법령적합성

- 동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사무의 위임등)제3항 및 폐기물관리법 제58조제2항,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3항 규정에 의거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 적합성에는 문제점이 없음.

지 방 자 치 법

제95조(사무의 위임등) ③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條例 또는 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權限에 속하는 事務중 調査・檢査・檢定・管理業務등 住民의 權利・義務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法人・團體 또는 그 機關이나 개인에게 委託할 수 있다.

폐 기 물 관 리 법

제58조(權限 또는 業務의 委任・委託)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부령(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파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나. 내용타당성

- 동 건은 각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매립으로 인한 심한 악취 발생과 침출수 배출로 수질과 토양이 오염되는 등 제2의 주변환경 오염문제 발생으로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을 “매립방식에서 소각방식으로 변경하고자,
- 앞으로 준공하게 될 1일 200톤(100톤/일×2기) 규모의 최첨단 현대식 소각처리시설인 파주시 환경관리센터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 시 직영시보다 민간위탁시 “시 재정부담 완화” “운영관리 요원의 증원 소요 감축효과” “환경개선효과 기대” “경쟁력확보 및 기술개발 촉진” “시설관리상 책임소재 명확” 등 동 시설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라 판단되나,
- 민간위탁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계획 및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읍·면·동별로 산재되어 있는 간이선별장의 처리문제
 - 수탁업체의 기구 및 인력, 재정부담능력, 기술보유정도 등을 고려한 수탁업체 선정방법 및 기준.

(국내 민간위탁 운영관리 사례 18개소 소각장 가운데 시공회사가 운영관리 주체인 곳은 12개소, 전문수탁기관 3개소, 지방공사 3개소로 나타내고 있음)

- 민간위탁 관리회사 도산 및 직원이 장기적으로 파업을 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대응방법.
- 시 직영시와 민간위탁시 연간 운영관리비의 수지측면에서 어느정도 절감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